

해 외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 출장건명: RCEP 대응방안과 목재교역 규제제도 연구(1차년도)-기초자료
(교역, 관세구조 등) 중심으로
- 출장 목적
 - APEC 불법벌채와 관련교역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Experts Group on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EGILAT))에 참석
 - 최근 법 발효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시작한 호주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
 - 향후 예상되는 목재류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불법벌채목 교역금지 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출장지역: 인도네시아, 메단
- 출장 기간: 2013년 6월 24일 ~ 6월 26일
- 출장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산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 상 민

○ 주요 면담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호주 농림수산부	Director	Ben Mitchell	+ 61-2-6272-4814
호주 농림수산부	Assistant Secretary	Paul McNamara	+ 61-2-6272-4620
호주 농림수산부	Policy Officer	Alexandra Banks	+ 61-2-6272-5571
미국 무역대표부	Deputy Assistant	David W. Oliver	+ 1-202-395-9522
미국 국무부 Forest Division	Chief	Charles V. Barber	+ 1-202-647-4799
미국 산림청	Acting Assistant Director for Policy	Jennifer L. Conje	+ 1-202-644-4624

○ 출장 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내용
6. 24 (월)	• 인도네시아 메단	• 현지 도착 • 미국 대표부 면담 • 한-호주 비공식 양자회의
6. 25 (화)	• 메단	• EGILAT - Private Sector Dialogue
6. 26 (수)	• 서울	• 귀국

II. 출장 결과

1. 호주

- 호주는 불법 벌채목의 교역을 막고 호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벌채 금지법 2012를 규정하였음. 법집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세한 규정은 2013년 5월 말에 개정하였으나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님.
- 이 번 만남은 호주측의 제의로 이루어졌으며,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mendment Regulation 2013」의 Schedule 2에 포함되는 국가별 가이드라인(Country Guideline)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임.
 - 개정된 규정의 Schedule 1에는 규제 대상품목을 HS 코드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법(the Act)에서 포괄적으로 규제 품목(regulated products)이라 칭한 것과 대조적임. 즉 불법벌채 금지법에는 모든 목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하지만,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함. 대상품목 제시에 관한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경우와 흡사함.
- 우리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부담에 되므로 추후 공식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함.
- 호주가 원하는 국가별 가이드라인은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체제(프레임

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수입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예정임.

- 벌채에 대한 규제
 - 합법적인 벌채와 관련된 법
 - 제품의 합법성 식별을 위한 정보 (벌채금지 수종, 벌채허가증, 벌채요금 지급 영수증, 합법적 벌채 증명 정보, 해당국가의 합법성 인증서)
 - 목제품 가공의 합법성 (유통과정 추적 계획, 가공에 투입된 국내재 및 수입재 추적 시스템)
 - 목재 및 목제품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접촉 정보
- 국가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14~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임. 대상국 선정 기준은 수입량, 수입액, 수출국으로서 호주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와 같은 내용은 호주로 목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들이 반드시 인지하여 준비할 사항임.
- 호주가 불법벌채목 및 목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준비하는 실사(due diligence)는 EU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합법성 인증을 위한 체제(프레임워크)가 포함되는 것이 다른 점임.
- 호주의 실사는 EU와 조화를 이룰 예정이므로 EU에서 인정받은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할 예정임.
- 합법성 인정 기준은 수입업자, 제품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짐. 예를 들어 복잡한 제품으로 여겨지는 종이나 섬유판이 제재목과 같은 단순한 제품과 같은 정도의 실사(due diligence) 충족도를 제시하여야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님. 합법성 증명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현재 기술 및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한 수준의 실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수준이 타 제품에 비해 낮다하더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불법벌채목 및 목제품 유통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이해당사자(stake holder)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정치권, 당사자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에 걸친 설득과 의견수렴, 소비자 홍보를 통한 합법 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시장분리 등을 통해 제정할 수 있었음.

- FSC 및 PEFC 등에 따른 인증은 합법성 인증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지만, 자동적인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음.

2. 미국

- 과거의 불법벌채는 해당 국가에 국한된 문제였으나,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한 불법벌채가 문제되면서 불법벌채목 및 목제품의 교역을 금지하는 규제가 마련됨. 따라서 일부에서는 불법벌채 금지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이라는 불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벌채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임. 그러나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임.
- 불법벌채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직 접하지 못했음.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반대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국내 사정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제도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것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관점과 기존 산업의 보호라는 관점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즉 불법벌채 근절이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합법적인 기업을 해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것임.
- 미국의 법은 제도시행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지만, EU의 경우 최초 도입자(Operator)가 부담해야함.
 - 호주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의 제도와 흡사했으나 점차 EU와 비슷해짐으로써 두 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불법벌채목 식별을 위해 DNA감식 등 다양한 고급기술이 시도됨.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음. 그러나 기술개발

에 따라 불법성 판단이 쉬워지면 생산자들도 원료조달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어 불법벌채 이용 확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 따라서 기술개발은 상대적인 효과, 즉 생산자들의 불법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줌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임.

- 미국은 규제 대상품목을 목재 및 목제품 전체로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대상(Decorated items)은 44류에 국한 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이 개발되면 종이와 섬유판과 같은 복잡한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3. 불법벌채 및 관련무역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산림제품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민간분야 대화(Private sector dialogue)

- 4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생산국, 가공·소비국, 새로운 기술적용, 공급망 분야로 나누어 진행됨.
- 1세션에서 목재생산국가의 민간분야 법인으로는 인도네시아 목재공업, 멕시코 Reforestmos, 자연보호협회에서 발표함.
- 2세션에서 목재 가공·소비국가의 민간분야 법인으로 중국 산림제품 공업협회, 호치민 수공업 및 목재공업협회, Forest legality alliance에서 발표
- 3세션에서는 불법벌채목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발전에 대해 호주의 Adelaide 대학, Simmonds Lumber Pty, Agroisolab GmbH, 산림과 산림제품 연구회에서 발표
- 4세션에서는 공급망 사례연구로 Bunning회사와 IKEA에서 발표
- 중국 산림제품 공업협회에서는 산업계는 Lacey ACT 등에 의해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들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중국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함.

- 호치민 수공업 및 목재공업협회는 인증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함.
- 인도네시아는 불법벌채 규제에 목재산업 분야에 회사, NGO 등이 참여하여 어려운 작업을 거쳐 자체적인 legal system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함.
- 새로운 기술분야 소개에 대해 중국 공업협회에서는 DNA분석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검사를 통해 샘플의 95%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발표자는 유전자 검사 등 전체적으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
- IKEA 발표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자체 시스템인 SVLK도 적용될 수 있다고 문의하였으며, IKEA는 현재 FSC 인증제도로 운영하는 데 환경적·사회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
- 목재생산국으로서 불법벌채 규제가 중요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중국 등은 정부 외에 목재산업협회 등 민간 관련분야까지 포함한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호주는 자국의 불법벌채 금지법 시행을 위한 국가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참여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보수집과 의견교환을 추진하였음. 한국도 호주로 수출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